

■ 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
시행규칙 [별표 2] <개정 2026. 3. 20.>

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농업기계(제7조제2항 관련)

1. 경운기
2. 농업용 트랙터
3. 이앙기
4. 삭제 <2026. 3. 20.>
5. 삭제 <2026. 3. 20.>
6. 바인더
7. 콤바인
8. 곡물건조기
9. 주행형 탈곡기
10. 예도형 예취기
11. 동력중경제초기
12. 동력수확기
13. 농산물 건조기
14. 관리기
15. 삭제 <2008.4.24>
16. 정식기
17. 농업용 난방기(노지용·비닐하우스용·온실용 또는 농가의 축산용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만 해당되며, 이 난방기에는 경유 면세유 공급은 제외한다)
18. 동력절단기
19. 농업용 방제기
20. 농업용 양수기
21. 예취기
22. 탈곡기
23. 삭제 <2008.4.24>
24. 동력배토기
25. 비료살포기
26. 삭제 <2008.4.24>
27.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
28. 농산물 결속기
29.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
30. 농산물 세척기

- 31. 삭제 <2008.4.24>
- 32. 동력혈굴기
- 33. 동력구절기
- 34.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
- 35.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
- 36. 동력파종기
- 37. 삭제 <2008.4.24>
- 38. 농선
- 39. 잔디깎는 기계(농업용으로서 25마력 이하인 것에 한한다)
- 40. 녹차채엽기
- 41. 버섯재배소독기
- 42. 농업용 무인 항공기
- 43. 농업용 로더(4톤 미만)
- 44. 동력제초기
- 45. 농업용 화물자동차(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1 제1호에 따른 경형, 소형 및 최대적재량이 1.2톤 이하인 중형 화물자동차로 한정한다)
- 46. 농업용 굴착기(1톤 미만)
- 47. 화식(火食) 사료용 사료배합기
- 48. 농업용 지게차